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중학사” 운영내규

2017.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중학사 (이하 '제중학사') 운영내규는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중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주체)

- ① 제중학사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과대학에서 관장한다.
- ② 의과대학은 기숙사 운영시행사 업무 및 파견인력을 관리한다.

제3조 (이용)

- ① 제중학사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 ② 제중학사의 이용기간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중학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피교육자의 신분인 자에게도 일정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출입시간)

- ① 기숙사의 출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 여는 시간 : 06:00
 2. 문 닫는 시간 : 02:00
- ②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기구

제5조 (조직)

제중학사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① 제중학사 운영위원회
- ② 제중학사 지도교수

- ③ 행정사감 (사무장)
- ④ 제중학사 학생자치위원회,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장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제중학사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부학장, 학생부장, 지도교수, 사무팀장, 학생파트장, 행정사감, 학생자치운영단 대표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맡고, 간사는 학생파트장이 맡는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입사자 선발 및 퇴사 관련 주요사항 심의
 - 2. 제중학사 운영내규의 제·개정
 - 3. 기숙사 회계 관련 주요사항 심의
 - 4.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5. 기타 사생관리 및 기숙사 운영 관련 주요사항 논의

제7조 (지도교수)

- ① 지도교수는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지도교수는 사생들의 생활지도를 관장한다.
- ③ 기타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행정사감)

- ① 제중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감(사무장)을 파견한다.
- ② 행정사감은 제중학사에 근무하는 사업시행사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제중학사의 운영 및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세부 업무분장은 연세대학교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른다.

제9조 (학생자치운영회)

- ① 전체사생을 대표하는 학생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학생자치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 사

제10조 (입사자격)

- ① 제중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한다.
 - 1. 의과대학(의예과 포함)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2.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의과학과, 보건학과,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 3. 국내외 의과대학 실습 학생
 - 4. 해외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한 학생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
 - 3.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의과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제11조 (입사선발 및 사생실 배정)

- ① 기숙사의 입사선발은 정기 입사선발, 중간 입사선발 등이 있다.
 - 1. 정기 입사선발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한다.
 - 2. 중간 입사선발은 퇴사자의 발생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선발한다.
 - 3. 방학기간 동안 퇴사가 발생할 경우, 방학기간 입사를 위해 추가 선발한다.
- ② 제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중학사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1. 입사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반명함판 사진 1매
- ③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기숙사비를 입사등록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
 - 2. 건강검진(흉부 X선) 결과서 1부
- ④ 운영위원장은 입사신청자 중 입사자를 선발한다.
- ⑤ 입사자의 사생실 배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의과대학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입사허가기간)

- ① 정기입사의 허가기간은 1학기 (개학 일로부터 당해 학기 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학년도 말에 종료한다.
- ③ 방학 기간에 한시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만 입사를 허가한다.

제4장 입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제13조 (출입증)

- ① 입사가 허가된 입사자는 출입증(카드)을 발급 받는다.
- ② 입사자는 사내에서는 출입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④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4조 (외박신고)

- ① 입사자의 외박은 다음과 같이 단기외박과 장기외박이 있다.
 1. 단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2. 장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 ②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에 비치된 외박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한다.
- ③ 외박신청서 미 작성자가 외박을 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벌점을 부과한다.
- ④ 외박시에도 입주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숙사비)

- ① 입사자의 기숙사비는 의과대학이 정한다.
- ② 기숙사비는 의과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한다.
단, 국내외 실습 및 교환학생은 실습 및 학업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한다.
- ③ 기숙사비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
- ④ 기숙사비의 반환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한다.
 1. 입사 시작일 일주일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2. 입사 6일 전 ~ 1일 전까지 취소 : 10만원을 공제 후 환불
 3. 입사 이후, 중도 퇴사시
 - 1) 입사 약정기간의 반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기숙사비 총액에서 15만원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
 - 2) 입사 약정기간의 반을 초과한 경우 : 환불금액 없음.
 4. 강제퇴사시 : 환불금액 없음
단, 군 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환불은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 등 직계가족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 한다.

제16조 (제중학사 내 금지사항)

- ①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도박·폭행·성희롱 등 성관련 부적절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5.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6. 공공이용물(예: 정수기, 전자렌지, 정기간행물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7. 흡연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사생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9. 남학생이 여학생의 기숙사 출입 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기숙사 출입하는 행위
 10. 광고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11.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12.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
 13.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14. 사생실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
 15.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7조 (협조의무)

- ① 운영위원장은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사감 이외에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점검 담당자와 행정사감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사생실 개방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사감 또는 점검 담당자는 긴급사항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지 없이 사생실에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변상 의무)

제중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화기단속과 청소 등)

- ①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20조 (전열기의 사용)

- ①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사생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다리미 등 발화가능성이 있는 전열기는 각 층의 세탁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②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운영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출입문 단속)

- ① 입사자는 현금이나 귀중품 등 고가품을 사생실내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 ② 입사자가 사생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진다.

제22조 (면 회)

- ①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 로비·라운지)에서 지정된 시간(09:00-22:00) 내에 행하여야 한다.
- ② 면회자는 신분증을 경비실(관리인)에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별 점

제23조 (별점부과)

- ① 별점은 별표 <별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 ② 전항의 <별점 기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의과대학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별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별점 기준표'참조>

제24조 (제재)

- ① 운영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 별점이 5점 이상인 경우
 2. 퇴사처분 : <별점 기준표>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별점을 받을 경우

[별점기준표]

	내 용	별점
1	절도·폭행·성희롱 등 성관련 부적절행위,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대리입사 제공자 및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행위	퇴사
3	남학생이 여학생의 기숙사에 출입하는 행위 / 여학생이 남학생의 기숙사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음주, 도박, 취사행위	퇴사
5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퇴사
6	출입증(카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5점
7	장기 무단 외박자 (3일 이상)	5점
8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9	흡연하는 행위	5점
10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11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2	공공이용물을 사용(私用)하거나 방안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4점
13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3점
14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3점
15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6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7	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	2점
18	낙서, 허가받지 않은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2점
19	사생실 안에서 취사하는 행위	2점
20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21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22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23	한학기 15점 이상	퇴사

제6장 퇴 사

제25조 (강제퇴사 처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제중학사 운영내규를 위반한 자

2. 제중학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제11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
 4. 학교 등록 미필자
 5. 기숙사비를 미납한 자
 6.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7. 한학기 별점이 15점 이상인 자
- ② 전항의 퇴사처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 ④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제1항의 4, 5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은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제25조에 의하여 강제퇴사를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1년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

제26조 (자진퇴사)

- ① 제중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중학사 행정실(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전항의 자진퇴사 신고를 수리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한다.

제27조 (퇴사절차)

- ①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 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행정사감의 확인 하에, 출입증(카드)의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④ 퇴사시 사생실을 정리, 정돈, 청소, 부착물 제거 후 관리실에 침구류(시트커버, 패드) 반납과 가구열쇠를 반납하고 개인물품은 밖으로 옮긴다.

부 칙

- (1) 이 내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내규 및 연세대학교 의료원 제규정을 준용한다.
- (2)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제중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